

먹물함미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2012년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부패·공익침해 신고

1398



국민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청렴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CONTENTS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관 6

I.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예시 9

[참고서식] 19

1.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제4조 관련)..... 20
2.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21
3. 국내외 활동 보고서(제13조제2항 관련) 22
4.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제14조 관련) 23
5. 영리행위 신고서(제15조 관련)..... 24
6.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제16조제2항 관련) 25
7.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제19조제1항·제2항 관련)..... 26
8.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제20조제1항 관련) 27
9.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제20조제3항 관련) 28

II.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 운영기준 ... 29

III.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문별 해설 39

- 제1조(목적) 40
- 제2조(정의) 41
- 제3조(적용 범위 등) 43
-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44
-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46
-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48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50
-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54
-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58
-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59
-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62
-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64
- 제13조(국외외 활동 제한 등) 65
-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69
-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70
-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72
-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74
- 제18조(성희롱 금지)..... 79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85
-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89
-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91
-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92
-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94
-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에 관한 권고) 95

IV. 관계 법령 97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문) 98
2.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 105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췌) ... 113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 12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관

1 제정 배경

- ☞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 일정한 한계 존재
-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제정·시행

2 추진 경과

-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09년 7월~10월)
- 국민인식도 조사('09년 11월)
 - ※ 제정 필요성 : 일반국민(64.3%), 지방의원(52.0%), 공무원(64.0%)
- 공개토론회 개최('09. 12. 15.)
 - ※ 지방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약 150명 참석
- 행정기관 의견조회 및 관계기관 협의('10년 1월~4월)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556개 기관
- 입법예고('10. 6. 10.~6. 30.), 행정규제심사('10. 6. 4.)
- 전원회의 의결('10. 7. 19.), 법제처 법령안 심사('10. 7. 23.)
- 국무회의 의결('10. 10. 26.)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포('10. 11. 2, '11. 2. 3. 시행)

3 구성 및 행위기준

- **구성** : 6장 24개 조문, 부칙 2조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직무관련자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 제2장, 제3장, 제4장 : 15개 행위기준 규정
 - 제5장, 제6장 : 행동강령 이행체계에 관한 규정

● 행위기준 (15개)

공정한 직무수행 (4개)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5개)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6개)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4)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5) · 인사 청탁 등의 금지(§.6)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7)	· 이권 개입 등의 금지(§.8)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9) ·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등(§.10)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1) · 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12)	· 국내외 활동 제한 등(§.13) · 외부강의 · 회의등의 신고(§.14) · 영리행위의 신고(§.15) · 금전 거래 등 제한(§.16)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 성희롱 금지(§.18)

4 운영 체계

● 자율적 운영

- 각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방의회별 특성과 근무 여건에 적합한 의회별 맞춤형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운영(§.23)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조례 제정·운영(§.22)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제도 운영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설치·운영(§.13)

☞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02-360-6822, 6828 / Fax 02-360-3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I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예시

청정^韓
세상

조례 제정 개요

1 주요내용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
- 해당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서식
- 교육계획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

2 형식

-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은 조례로 제정
 - －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 가능

3 명칭

-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의 명칭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으로 함
-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예시1)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의회명)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 － (예시2) (의회명)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 － (예시3) (의회명)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규정

4 필요성

-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관련서식 마련, 법령내용 전달 및 준수선서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의회에서 행동강령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될 것임
- ☞ 각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I.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예시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 조례 제정 시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에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점수 10점 부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부분(제21조-제32조)을 제외한 경우 5점 부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의회명)의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회명)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회명)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의회명)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의장은 필요시 “직무관련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회명)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장은 필요시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의장은 필요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제공받는 금품등”을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 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 (※ 의장은 필요시 의원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을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장은 필요시 자문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처[사무국, 사무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치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서식

1.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제4조 관련)
2.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3. 국내외 활동 보고서(제13조제2항 관련)
4.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제14조 관련)
5. 영리행위 신고서(제15조 관련)
6.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제16조제2항 관련)
7.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제19조제1항·제2항 관련)
8.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제20조제1항 관련)
9.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제20조제3항 관련)

1 |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명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조사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20 소명자 (서명)				

2 |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0 신청자 (서명)						

3 | 국내외 활동 보고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명	직위	정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 받은 내역	
	기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제 출 자 (서명)				

4 | 외부강의 · 회의등 신고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 · 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 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신 고 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5 | 영리행위 신고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선거 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월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자 (서명)					

6 |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정당						
	소속위원회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 고 자 (서명)									

7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제2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소속위원회(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20 신고자 성명 (서명)				

8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 제1항 관련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구인	성명		직위	
	소속위원회		정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20 청구자 (서명)				

II.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 운영기준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구축 시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에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점수 5점** 부여

1.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제도의 의의

가. 의의

○ 지방의회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나. 근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개 내용

- 관련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의장의 승인 내용
-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
-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사유·경과 및 활동보고서 등

라. 공개 방법

- 의회별로 자유로이 정하여 운영하되,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을 권장
- 주민 요청 등 필요 시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 서류 비치 등을 병행



2.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제도 운영기준

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전용 전자게시판 마련

구 분	내 용
① 게시판 명칭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 게시판 명칭에 '외부 지원' 표기 여부는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② 게시판 위치	●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본메뉴 또는 '의정활동' 메뉴의 소메뉴로 생성하는 것을 권장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 홈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본메뉴로 생성하는 경우)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소메뉴로 생성하는 경우) ※ 이미 유사 게시판을 마련·운영 중인 경우, 해당 게시판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 〈예〉 해외 연수·교류 활동을 안내하는 게시판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게시판에 국내 활동상황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른 내용을 추가·확대하여 운영
③ 접속경로 단축	● 주민이 게시판의 내용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최소화 – 의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바로가기', '빠른메뉴' 등의 버튼을 생성 – 시인성(視認性)이 좋은 버튼 디자인을 채택하여 주민이 해당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
④ 게시판 구성	● 주민이 참가의원·지원기관·지원금액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항목을 확인하기 쉽도록 제시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⑤ 상세창 제공	● 게시판 화면에는 공개 대상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주민이 게시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창으로 이동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⑥ 검색 기능 제공	● 활동보고서 공개 여부별, 참가의원별, 지원기관별 등 검색자가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건별 검색 기능 마련

나.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운영

▶ 자료 게시자 및 게시 시기

- 의장은 국내외 활동 참가 의원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일 이내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게시

▶ 게시 대상 자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11. 2. 3.) 이후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의회의 예산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 지원금으로 수행한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상황 및 보고서
- ※ 의회 결정에 따라 의회 예산을 사용한 국내외 활동 상황도 함께 공개 가능
- 다음 자료는 파일로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
 - 의원이 신청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 의장이 처리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승인서'
 - 의원이 작성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보고서'
 - ※ 국내외 활동보고서에 승인신청서와 승인서를 포함하여 하나의 파일로 작성 가능

▶ 국내외 활동 지원비

- 해당 국내외 활동에 지원된 비용 일체
- 여비·활동비 등과 숙박시설·음식점 이용권, 입장료 및 기타 현물이 함께 지원된 경우, 해당 이용권·현물 등도 제공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산정하여 지원액에 합산
- 금액 단위는 의회 자율로 결정하여 명기(원·천원·백만원 등)

다. 행정 사항: 게시판 구축 사실 및 변경 사항 통보

- 게시판 구축 완료 사실 통보: 2012. 7. 27.(금)까지
- 게시판 관련 변경 사항 통보: 변경 후 1주일 이내
- ※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02-360-6828)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 관련 질의 · 회신 사례

Q. ○○○에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외국의 관련 시설을 견학시키고자 해외연수 초청을 해 왔을 경우 이에 따라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11. 2월)

A.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기관 · 단체로부터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제13조제1항 본문),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 · 경과,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3조제1항 단서)
 -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이 의장에게 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을 한 경우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제22조제1항제2호).

Q. 제13조제1항 중 '기관'과 '단체'의 범위는? (권익위 상담 회신, '11. 3월)

A. 제13조제1항의 기관 · 단체란 해당 의원이 소속된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 · 단체를 말함. 따라서 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공사 · 공단 등의 공직유관단체는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NGO 등의 민간단체도 포함됨.

Q.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였는바, 해당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동 해외연수비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권익위 상담 회신 '12. 3월)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지방의회 이외의 외부 기관 · 단체로부터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 · 경과,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 내용은 의장이 승인을 하였느냐에 관한 문제로 관련 의원이 승인신청을 한 경우 의장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자체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구성(안)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 ▶ ○○○도(시 · 군 · 구)의회 의원 모두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 -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이 제정된 경우 해당 조문 명기)에 따라 소속 의원이 외부 기관 · 단체로부터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000-0000)

※ 외부 지원에 따른 국내외 활동 상황 외에 의회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함께 공개 가능 (의회 자율 결정)

연번	참가 의원	활동 기간	활동 개요	활동비 (원)	지원 기관	활동보고서		게시 일자
						공개	비공개	
1	장길산 홍길동	2012.01.06. ~ 2012.01.20.	(활동 내용 요약)	123,456,789	(지원기관명)	○ (보고서 등 파일 첨부)		2012 01.30.
2							○ (비공개 사유 명기)	
: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생성 사례(예시)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생성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의정활동' 메뉴의 소메뉴로 생성)

의정활동
주인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전체 ▼ 참가의원 ▼

검색

번호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활동비(원)	지원기관	활동보고서	게시일자
2	가의원, 나의원	2012.03.29 2012.03.31	장애인 봉사활동 ...	1,000,000	**군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2012.03.28
1	다의원, 라의원	2012.03.21 2012.03.31	회의 ...	1,200,120	**시청	공개 [...]	2012.03.21

□ 상세창 연결 기능 설정

- '참가의원', '활동개요', '활동보고서' 칼럼에 상세창 연결 기능 부여

의정활동
주인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전체 ▼ 참가의원 ▼

검색

번호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활동비(원)	지원기관	활동보고서	게시일자
2	가의원, 나의원	2012.03.29 2012.03.31	장애인 봉사활동 ...	1,000,000	**군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2012.03.28
1	다의원, 라의원	2012.03.21 2012.03.31	회의 ...	1,200,120	**시청	공개 [...]	2012.03.21

□ 비공개 상세창

의정활동
주인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의원	가의원, 나의원	활동기간	2012.03.29~2012.03.31
활동비	1,000,000	지원기관	**군청
공개/비공개	비공개		
비공개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 봉사활동 참여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에 따른 국내외 활동 상황 외에 의회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함께 공개 가능

□ 공개 상세창

의정활동
주인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의원	다의원, 라의원	활동기간	2012.03.21~2012.03.31
활동비	1,200,120	지원기관	**시청
공개/비공개	공개		
첨부	test.hwp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에 따른 국내외 활동 상황 외에 의회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함께 공개 가능

□ 검색 기능 제공(검색 조건: 활동보고서 공개 · 비공개)

의정활동
주인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전체

참가의원

지원기관

검색

번호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활동비(원)	지원기관	활동보고서	게시일자
2	가의원, 나의원	2012.03.29 2012.03.31	장애인 봉사활동 ...	1,000,000	**군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2012.03.28
1	다의원, 라의원	2012.03.21 2012.03.31	회는 ...	1,200,120	**시청	공개 [...]	2012.03.21

□ 검색 기능 제공(검색 조건: 참가의원 · 지원기관)

의정활동
주인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전체

참가의원

지원기관

검색

번호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활동비(원)	지원기관	활동보고서	게시일자
2	가의원, 나의원	2012.03.29 2012.03.31	장애인 봉사활동 ...	1,000,000	**군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2012.03.28
1	다의원, 라의원	2012.03.21 2012.03.31	회는 ...	1,200,120	**시청	공개 [...]	2012.03.2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문별 해설

38

제1조 목 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정 목적

-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은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별도로 제정

1-2. 제정 경과

-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09.7월~10월)
 - ※ 지방자치·반부패 전공 교수, 지방의회의원(광역·기초) 참석
- 국민인식도 조사('09.11월)
 - ※ 제정 필요성: 일반국민(64.3%), 지방의원(52.0%), 공무원(64.0%)
- 공개토론회 개최('09.12.15.)
 - ※ 지방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약 150명 참석
- 행정기관 의견조회 및 관계기관 협의('10.1월~4월)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556개 기관
- 행정규제심사('10.6.4.), 입법예고('10.6.10.~6.30.)
- 위원회 전원위 의결('10.7.19.), 법제처 법령안 심사('10.7.23.~9.13.)
- 국무회의 의결('10.10.26.), 공포('10.11.2, '11.2.3. 시행)

제2조 정 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1. 직무관련자(제2조제1호)

가. 직무관련자: 의원에 대하여 직무상 열후적(劣後的) 지위에 있는 자

- 개별 의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의원(A)의 직무관련자(C)에 대한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의원(B)도 해당 의원의 직무관련자(C)와 직무관련자 관계 성립

나. 직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계된 모든 업무

- 해당 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계된 모든 업무를 포함

다.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행동강령상 기관·단체의 구분은 행동강령의 제정 단위에 의하므로 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물론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내 교육지원청과 학교도 포함
- ※ 의장은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시 지역 사회의 특성 및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각 의회의 실정에 맞는 직무관련자 유형을 나목 이하에 추가 가능
- 〈예〉 ○○유치위원회, ○○조합, ○○작목반, ○○사업자, ○○번영회 등

2-2. 선물(제2조제2호)

가. 유가증권: 사법(私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

〈예〉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탑승권 등

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영업권,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2-3. 향응(제2조제3호)

- 향응: 음식물·골프·주류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판례] 유가증권 여부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化體)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1. 적용 범위(제3조제1항)

가. 적용 대상: 지방의회의원

나. 적용 시점: 2011. 2. 3.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이전에는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같이 적용받아 왔음

3-2. 위반행위 처리기간(제3조제3항)

-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되므로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의원직을 사직·퇴직·상실한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의원이 다시 의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Q. A의원이 제6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난 경우

- A. ① A의원이 제6대 지방의회를 끝으로 의원직을 다시 가지지 않은 경우: 종결
- ② A의원이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다시 의원직을 가지게 된 경우: 제7대 의회에서 A의원의 제6대 지방의회 재임 당시 행동강령 위반사건 처리 가능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4-1. 규정 취지

- 의원의 직무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소명 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4-2. 내용 해설

가. 인적(人的) 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에 의함

나. 회피 사유

- 본인·배우자 및 친족 등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 기타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다. 회피 방법

-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소명
 - ▶ 서식 1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참조

4-3. 관련 사례

- △△시 새마을부녀회장이자 △△시의회 의원인 A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교육훈련, 비교행정연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및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새마을조직 육성조례안'을 발의, 동료 의원들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제 밥그릇 챙기기'라며 비난(△△투데이, '07년 10월)
- △△시의회 의원은 자신이 채권자로 있고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일부를 소유한 차고지 땅을 시(市)가 매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여 물의 야기(△△일보, '12년 3월)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5-1. 규정 취지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예산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불공정 사례를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동일한 규정

5-2. 내용 해설

가. 예산

- 여비·업무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 등 모든 공공 예산

나. 목적 외 사용

- 예산 관련 법령·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

다. 재산상 손해

-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

5-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公款 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일보, '10년 7월)
- △△시의회 B의원은 허위준공검사서로 도의원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일보, '10년 7월)
- △△구의회 의원 3명은 2007년 3박4일간 일본 연수를 다녀왔으면서도 5박6일 일정의 계획서를 올려 1인당 62만원의 해외연수비를 과다 수령(△△일보, '09년 7월)
- △△구의회 C위원장은 가족 식사비 등 사적인 용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D의원은 주점 유흥비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일보, '08년 11월)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6-1. 규정 취지

-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 인사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2항과 동일한 규정

6-2. 내용 해설

가. 직위 이용: 의원 신분이나 소관 업무 등에 기인한 영향력 행사

나. 직무관련자: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

다. 인사: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이나 징계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라. 위반 여부 판단

- 의원이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6-3. 관련 사례

- △△도의회 A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뜻대로 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장을 폭행(△△일보, '08년 12월)
- △△군의회 B의원은 승진 청탁 대가로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일보, '09년 8월)
- △△시의회 C의장은 의회사무처 D사무관이 명예퇴직하자 집행기관에 E(6급)를 후임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집행기관에서 F(6급)로 배정하자 당초 요청한 대로 배치하라며 인사 개입(△△일보, '09년 7월)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1. 규정 취지

-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방지
- 특정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이 위원인 의원에게 금품등을 건네며 청탁하는 부정 소지 차단

7-2. 내용 해설

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제7조제1호)

- 개별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예〉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상임위원회별 소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나. 심의·의결

- 제7조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심의·의결인지 또는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

7-3. 관련 사례

-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A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구의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위원회 소속B의원은 △△구의 주택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수수(△△신문, '09년 5월)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C의원은 2002년 도시계획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으로 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신문, '08년 9월)

7-4. 질의 회신

Q.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에서 제18조에 이르는 15개 행위기준의 준수 주체는 지방의회의원이므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등에서의 심의·의결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또한 지방의회의원임

Q. 농수산위원회(상임위원회) 소속 A의원이 집행기관의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A의원의 위원 위촉을 취소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여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에서 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규정이며,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가부에 대한 규정이 아님

Q.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심의·의결 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결정된 사항도 무효인지 여부

A.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의 유·무효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및 운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판단

Q. △△특별시(광역시·도) 감사관 소속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감사관 소관 사항 관장) 소속 의원이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민감사청구는 자치구청장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자치구 주민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사항임

A. 주민감사청구의 내용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자치구청장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하게 되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할 것임

참고 규정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982호, 2011.7.29. 일부개정, 2011.10.30. 시행)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8-1. 규정 취지

- **제1항(이권 개입 금지)**
 - 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 **제2항(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의원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와 동일한 규정

8-2. 내용 해설

가. 직위 이용: 6-2 참조

나. 이익: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 제8조제2항에서의 이익은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의원과 의원의 그러한 행위로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타인의 이익을 모두 포함
〈예〉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우호적 평판 등

다. 위반 요건(제2항): 3개 요건 모두 충족 시 위반

- ㉠ (본인 또는 타인의)사적 이익 도모
- ㉡ 기관 명칭 또는 직위 사용, ㉢ 공표·게시

8-3. 관련 사례

허가, 계약 등 관련

- △△시의회 A의원은 2008년 △△시 △△구 △△동 자연녹지지역 내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000여만원 수수(△△일보, '10. 7월)
- △△시의회 B의원은 아파트 시행사에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압력 행사(△△일보, '10. 7월)
- △△시의회 C의원은 자치단체 납품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3,500만원 수수(△△일보, '10. 7월)
- △△구의회 A의장은 2008년 주안3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업체 선정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1억여원 수수(△△일보, '10. 3월)
- △△시의원 10여명은 야간경관사업 업체선정과 관련, 수백만원 수수(한겨레, '10. 8월)
- △△시의원 2명은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공사수수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 수수(△△일보, '09. 12월)
- △△시의회 B의원은 △△시의 주민숙원사업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주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행사(△△△△일보, '10. 6월)
- △△시의회 C의원은 2008년 6월 한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시 △△면에 설치를 추진하는 골프장 공사 인허가 과정을 앞당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일보, '09. 12월)
- △△시의회 D의원은 사회복지법인 허가과정 개입 및 금품 수수(△△일보, '09. 12월)
- △△시의회 E의원은 83억원에 이르는 민간공사를 앞선해준 대가로 아들의 선거자금 5,000만원을 수주업체에 요구(△△일보 '10. 11월)
- △△시의회 F의장은 개발행위가 규제된 △△시 △△면 임야(9,410㎡)를 시청 허가부서 공무원에게 로비해 공장용지로 허가를 내주겠다며 모 개발 대표 ㄱ씨에게 1억원을 요구(△△△△일보, '09. 12월)

특별채용 등 인사 관련

- △△시의회 A의원의 자녀는 공립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시 지원자 4명 중 최고점을 받아 채용되는 특혜 의혹(△△일보, '10. 9월)
- △△△구의회 의원들의 자녀들이 산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인 2003년 11월 집중적으로 채용되는 등 특혜 의혹(△△신문, '10. 9월)
- △△도의회 B의원은 신규 채용 관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도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 의혹(△△일보, '08. 12월)



참고 자료

◆ 참고자료: 2009년 행동강령 중점 운영사항('09년 반부패 정책 추진지침 회의 자료, 2009.1.21.)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적용 예시

▶ 금지 요건 (※ 4개 요건 모두 해당 시 금지)

① 직무범위 외 ② 사적 이익 ③ 공표·게시 ④ 기관명칭 또는 직위 사용

※ 금지되는 행위

- 도로교통법 등 위반 시 경찰 등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기관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 친구의 개업식 장소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을 보내 게시토록 하는 행위
- 자신의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 단, 프로필(이력)에 다른 경력과 함께 단순 기재한 경우는 제외

※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기관장이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업무추진비로 기관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이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 (①·② 미해당)
-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명기한 액자를 개인 집에 걸어 놓게 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③ 미해당)
-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④ 미해당)
- 경조사의 축·부익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경우(②·③ 미해당)
-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가입 (③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 등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행위 (② 미해당)
-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토록 하는 행위 (① 미해당)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9-1. 규정 취지

- 의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꾀하는 부정행위 방지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동일한 규정

9-2. 내용 해설

- 직무(제1항): 2-1 참조
-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소속 의원)과 협의하여 개별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적합한 세부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별 행동강령에 반영

9-3. 관련 사례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A의원은 2001년 8월 주거지구로 지정된 서구 △△동의 상가 부지를 2006년 경매를 통해 매입, 같은 블록 내 토지로 환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직무수행 중 해당 블록 내에서는 식당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정보를 지득하여, 2007년 7월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을 하여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대신 환지 받음(△△일보, '08. 7월)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10-1. 규정 취지

- 의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 예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이득(부가서비스)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확인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와 동일한 규정

10-2. 내용 해설

- 가. 공용물:**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 나. 사적(私的)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용물의 본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익이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10-3. 관련 사례

- △△시의회는 의원들에게 의정자료 수집 목적으로 무선망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은 해당 노트북을 개인 사업 용도 등으로 사적 사용(△△일보, '08. 10월)
- △△시의회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직무와 상관없이 단지 인근 냉면집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원행용 대형버스(25인승)를 이용(△△신문, '08. 5월)

참고 자료

○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92호, 2012.1.12.)

구 분	기 준
관리범위	–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 3. 1. 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관리기간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신고 (입력)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출장자 등”이라 함)은 공무여행 후 14일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이하 “e-사람” 등이라 함)에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1317, '06. 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는 폐지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활용방법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1등정액, 중간(비즈니스)정액 및 2등(이코노미)정액 지급대상자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공좌석 승급(업그레이드) 기준 1등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이나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V.2.다.(1)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등정액 지급 대상자가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의 일원이거나, 항공여행 시간이 8시간(편도)이상인 공무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한단계 높은 항공좌석(비즈니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2등 정액을 지급받고 중간석(비즈니스)으로 좌석을 조정할 수 있다. – 부가서비스 등 이용 기준(담당부서에 이용내역 증거서류 제출필요) 출장자는 필요한 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 등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 이용할 수 있다.

구 분	기 준
활용절차	– 출장자 등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항공운임 신청시 그 확인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별지 제5호 서식상 지정한 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 GTR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 중앙행정기관의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관리방법	●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e-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1317, '06.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는 폐지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 중앙행정기관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 복귀시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한다. ●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 이첩하도록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 근무기관이 관리하였던 해당 공무원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재임용 후 14일 이내에 「e-사람」 등에 입력 관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헌법기관에서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과 같은 날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재직 중에 정무직 등에 내정되어 공무원을 퇴직하고 법령상의 임용절차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공무원 여비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현황 등(개인별 자료는 제외) 관련 자료를 「e-사람」을 통해 통합하고,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 규정 취지

- 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행위 방지
- 직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차단하여 청렴의식 제고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와 유사한 규정

11-2. 내용 해설

가. 금품등

-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
- 선물·향응: 2-2, 2-3 각각 참조

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제1항제2호)

-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하게 금품등을 제공받게 될 경우 해당 금품등의 가액 범위
- ※ 의장은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가액을 정하고 이를 의회별 행동강령에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만원 이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 중 일선 민원부서나 지도·단속부서 직원에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기관도 있음

다.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제1항제4호)

-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별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전이나 예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을 제공하는 관행 개선

라. 이벤트 등에서의 추첨에 의한 금품등(제1항제5호)

- 세미나·협의회 등의 주최자가 추첨 방식을 빌려 참가자 전원에게 준비 물품을 고루 나누어 주는 것은 제1항제4호의 기념품 지급에 해당
- 전국 대학 관재·구매관리자 동계세미나 시 기업들이 경품을 협찬하고 협찬 기업의 대학 관재·구매 업무 담당직원이 직접 자사의 경품을 소개한 후 참가자 중 한 대학을 지목하여 해당 회사의 협찬 물품(침대·비데·리조트 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 지급(△△△방송, '10. 12월)

11-3. 관련 사례

- △△시의회 의원 2명은 검찰의 S0파트 건축비리 수수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들로부터 상품권 수수(△△일보, '09. 3월)
- △△도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지방 공기업 △△△공사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수수(△△△신문, '05. 2월)
- △△의회 의장은 △△군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고 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홍보용 제품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뉴스, '12. 3월)

제12조 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2-1. 규정 취지

- 의원이 의회 내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매표를 조건으로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 금품등으로 인한 직무 왜곡 및 부정행위 등 방지

12-2. 내용 해설

가. 의회 내 선거: 의원들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하는 선거

나. 직무: ☞ 2-1 참조

다. 금품등: ☞ 11-2 참조

12-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장은 2008년 의장 선거 전 28명의 시의원에게 3,50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일보, '10. 5월)
- △△시의회 B의원은 2008년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지지해 준 의원 2명에게 지지 대가로 금품 제공(△△신문, '08. 9월)
- △△도의회 의원 9명은 김 모 의원으로부터 “(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수령(△△일보, '11. 4월)

제13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 규정 취지

-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 외부 기관·단체가 로비 목적으로 의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 의원이 금전 제공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13-2. 내용 해설

가. 외부 기관·단체: 해당 의원의 소속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시민단체 등도 포함

나.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만 제한

- 개인 여행, 가족 여행 등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음
- 직무와 무관하게 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제공자가 직무관련자라면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됨

다. 사전 승인, 사후 보고서 제출

- 의장은 사전 승인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 서식 2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서식 3 [국내외 활동보고서] 참조

라.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상황 공개

- 의장은 소속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 참고자료 1.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제도 운영기준(안)] 참조

개인 빌라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뉴욕대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의 건축비를 모금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윤리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추가 조사 결과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 적용대상	의원 및 보좌관, 의원실 직원
· 선물	50달러 이상, 연간 단일 제공자로부터 100달러 이상 선물수령 금지
· 여행 (민간인이 지원하는 공적 여행)	윤리위 허가 요구, 사전·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지원받을 수 있는 여행경비는 교통편 및 숙박비용, 항공기는 비즈니스 클래스
· 외부 수입	의원 및 고위보좌관의 연간 외부수입 한계는 2만5830달러(2009년)
· 유세활동	공직자원의 정치적 목적 사용 금지, 보좌진의 선거활동은 의원실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만 허용

미국 정계의 거물들이 작은 윤리적 실책으로 정치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당장 의원실 남자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윤리위 심사대상에 올라 있는 에릭 매사 하원의원(민주·뉴욕)이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페터슨 뉴욕주지사는 월드시리즈 양키스 경기의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아 주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임압박을 받고 있다.

참고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12호, 2010.2.4. 일부개정, 2010.5.5. 시행)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3-3. 관련 사례(외국)

- '20선 거목' 쓰러뜨린 미(美) 하원 윤리규정: 친한파 좌장 랭겔 세입위장 '협찬 외유' 사퇴 (경향신문, '10. 3. 4.)

20선(選), 40년 정치생활의 관록도 윤리규정 앞에서는 무력했다. 찰스 랭겔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 (79)이 3일 위원장직을 잠정적으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이 자금을 댄 해외여행이 화근이 됐다. 사소한 윤리규정 위반도 '중죄'로 몰고 가는 미(美)의회의 전통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랭겔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동료의원들이 나를 두둔하는 일을 피하고, 내 문제로 보건의료개혁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물론 굵직한 법안 통과와 열쇠를 쥔 세입위원장의 의사봉은 포스티 스타크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임시로 잡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 중 한 명을 낙마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하원 윤리위가 지난주 2007~2008년 랭겔의 도미니카공화국 여행 당시 아메리칸항공(AA)을 비롯한 민간기업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랭겔 의원은 자금원이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보좌관들은 알고 있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원 윤리규정은 공무상 해외출장의 경우 민간기업이 경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랭겔은 이 밖에도 도미니카공화국에 소유한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4-1. 규정 취지

- 의원이 외부강의·회의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집단과 부당하게 유착되는 등의 부패 차단
 -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와 유사한 규정

14-2. 내용 해설

가. 신고 대상 외부강의·회의등

-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 등의 행위
- 신고 대상 여부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나. 신고 기관: 의회 의장

▶ 서식 4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참조

다. 사전 신고 원칙

- 대가나 소요시간 등 신고사항 중 일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 참석 사실만 사전 신고한 후 강의·회의등이 끝나는 즉시 해당 부분을 추완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5-1. 규정 취지

-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 방지
- 자신의 영리행위로 인하여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를 의원 스스로 사전에 통제

15-2. 내용 해설

가. 신고 대상: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 새로이 영리행위를 하려는 의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리행위를 하고 있던 의원이 상임위 변경 등으로 기존의 영리행위와 현행 업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나. 신고 기관: 의회 의장

- ▶ 서식 5 [영리행위 신고서] 참조

15-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용역 입찰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함(△△일보, '09. 12월)
- △△구의회 B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에서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투데이, '10. 11월)
- △△도의회 C의원은 수건가게를 개업하면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을 상대로 판매(△△일보, '08. 12월)
-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D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Y마트를 부인 명의로 바꾼 뒤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 내 각급 학교 37곳과 수의계약 등을 통해 11억원 이상의 육류(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공급(△△일보, '08. 7월)



제16조 금전 거래 등 제한

제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6-1. 규정 취지

-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의원이 금전 대차 명목으로 활동비나 뇌물 등을 제공받는 소지 차단
-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고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

16-2. 내용 해설

가. 제한 대상

- 의원 상호간 및 의원-직무관련자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의원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는 행위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금전 거래 사실 신고: 의회 의장

- 금전 거래 당시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2011. 2. 3.) 이후 신고 대상 관계가 발생한 경우(지방의회의원 피선, 직무관련자 관계 발생)에는 신고 대상 관계가 발생한 시점에 제2항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 의장에게 신고
- ▶ 서식 6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참조

참고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 2011.3.31. 일부개정, 2012.3.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권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17-1. 규정 취지

-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 · 편법 금품 수수 행위 방지 및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와 동일한 규정

17-2. 내용 해설

가. 직무관련자: ☞ 2-1 참조

나. 소속 직원(제1항제2호): 의회 사무처(국/과) 소속 직원

-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 · 시 · 군 · 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1항제2호의 소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음

다. 신문 · 방송(제1항제3호)

- 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 방송: 「방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
 - － 텔레비전 · 라디오 · 데이터 ·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제2조제1호)
 - － 중계유선방송(제2조제4호) 및 전광판방송(제2조제10호)

라. 내부통신망(제1항제3호)

-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 · 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부메시지 등)
- 의회 홈페이지 등 내부통신망이 아닌 곳에 의원 경조사 게시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과 직원에게만 별도의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외부 제3자의 게시판 접근 차단

Q.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도 · 시 · 군 · 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 직원이 동일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경우

A. 해당 인트라넷 경조사 게시판에 의원 경조사를 게재할 경우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는 집행기관 직원도 볼 수 있게 되므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
⇒ 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게시판을 생성하거나 사내 메시지 등 다른 방법 이용

마.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5만원 이내로 규정 · 운영
- 제2항은 의원이 자비(自費)로 경조금품을 주고받는 경우에 적용, 의원이 의회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비목의 지출규정에 따름
- ※ 의장은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가액을 정하고 이를 의회별 행동강령에 규정

바. 친족(제2항제1호)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민법」 제777조)

17-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의 집으로 청첩장을 대거 발송,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일면식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대거 발송한 것은 부조금을 노린 치졸한 행위이며,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집주소를 유출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뉴스, '03. 9월)
- △△군의회 B의장은 관내 업체와 건설업자들에게 아기 돌잔치 참석장을 보내어 수 십개의 금반지와 3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축의금을 수령(△△타임스, '04. 3월)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C의원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사실을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회람토록 하고 시청의 각 실과에까지 알람장을 돌리게 함.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시켜 청첩장 주소록을 작성케 하고 시청 실국장과 본인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돌리도록 하는 등 물의 야기(△△△, '06. 11월)
- △△시의회 B의장은 △△시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녀 결혼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송, 결혼 하객물이라는 비난 여론 고조(△△뉴스, '11. 10월)

17-4. 질의 회신

Q.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와 관련하여,

- ① 의원이 되기 전 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지,
- ② 의원이 아닌 의회 소속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가능한지,
- ③ 구청 직원들이 주변의 소문을 듣고 결혼식장을 찾아온 경우에 추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답례의 글을 띄우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A. 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를 통지할 때 해당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면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직무관련자 관계 여부는 경조사 통지자(의회 소속 직원)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의원)를 기준으로 판단.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있음(위반 사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
 ③ 해당 기관의 내부통신망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율 사항이 아님

참고 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74호, 2010.1.25. 타법개정, 2010.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규정

방송법

(법률 제10856호, 2011.7.14. 일부개정, 2012.1.15. 시행)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각목 생략)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각목 생략)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 9. (생략)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 12. (생략)
 13. ~ 25. (생략)

제18조 성희롱 금지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1. 규정 취지

-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성희롱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여 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스스로 삼가도록 주의 환기
- 의회 내 성(性) 소수자인 여성의원의 적극적 직무 여건 조성

18-2. 내용 해설

가.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성희롱 행위 금지 대상자: 의원 또는 소속 직원

- 성희롱 피해 대상자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남성(여성)의 여성(남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나 동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도 금지됨

- 여성 근로자들이 연하의 남성 근로자(A)에게 회사 생산현장에서 엉덩이를 치거나 등 뒤에서 껴안고 “A는 내꺼야, 아무도 손대지 마” 라고 하여 A가 “왜 이러세요”라며 거부의를 표시해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A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성희롱 인정(01년 서울지방법노동청 결정)
- B(女)가 회식자리에서 같은 회사 직원 C(女)로부터 “회사가 연애 장소냐? △△와 연애하냐? 회사가 연애장소도 아닌데 연애하려면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시작하는 피해를 입고 진정한 데 대해 성희롱 인정(06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3.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워크숍 술자리에서 시청 공무원 B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자신의 방 열쇠를 B의 손에 쥐어주며 “숙소가 불편하면 내 숙소로 와서 자라”고 수 차례 얘기하는 등 B를 성희롱함(△△뉴스, '09. 12월)
- △△시의회 C의원은 회의 도중 동료 여성의원인 D의원을 겨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여 D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함(△△△, '10. 7월)
- △△군의회 E의원은 군청 계약직 여직원 F에게 “(누드) 사진을 찍자”는 등의 발언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당한 데 이어 시내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F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하여 고발당함(△△△△뉴스, '10. 9월)
- △△시의회 부의장인 G의원은 모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시장 부인 H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부의장직을 사퇴하였으며 H로부터 기소당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일보, '12. 2월)

참고 자료(관련 법제)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의 권고나 고발 및 징계 권고 등을 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및 의무위반 시 제재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각각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 그 밖에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경범죄처벌법」,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참고 자료(해석례)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법제처 10-0281, 2010.10.15,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질의요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은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문언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관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국가기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에서 사업·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행정·입법·사법기관 또는 공공·민간기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폭넓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에서 국가의 조직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국회를, 제4장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제5장에서는 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의 국가기관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므로 국회와 법원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법원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을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국회의원과 법관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주체를 규정하면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기관의 구성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의원과 법관은 국가기관인 국회와 법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규정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 지침

(여성가족부고시 제2009-2호, 2008.12.23. 일부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시간)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항의 조치이외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교육훈련 지원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3.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 ②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 · 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 · 처리기한 · 처리체계 · 처리방법 · 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발방지대책)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2호, 2008.12.23>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의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1. 규정 취지

- 의원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19-2. 내용 해설

가. 신고 주체(제1항): 누구나 할 수 있음

- 신고인의 신분과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나 외국 국적자도 가능

나. 신고 방법(제2항)

- 신고인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의회별 행동강령에 신고 수단(우편, 인터넷, 방문 등)과 신고 처리 기간(예: 60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의회 홈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신고·상담창구 개설 권장
- 무고(誣告)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명 신고가 원칙이라 할 것이나,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장
- ▶ 서식 7(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참조

다. 신고 처리(제3항 및 제5항)

- 의장이 소속 의원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위반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반드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함(의무사항)
- 처리 절차
 - 신고서 및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 검토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요청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위반 확인 시)

라. 신고자 보호(제4항)

-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음

참고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27호, 2012.2.17. 일부개정 · 시행)

-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

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 규정 취지

-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규정 상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금품등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의원이 금지된 금품등을 받더라도 금품등의 제공자에게 도로 반환하면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자발적인 준수 및 실천 유도

20-2. 내용 해설

가. 금지된 금품등(제1항)

- 의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게 수령한 금품등

나.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방법(제1항 · 제2항)

○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 기한(시한): 알게 된 즉시
- 수령 사실을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수령 사실을 알았더라도 즉시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즉시 반환해야 함
- 반환 비용 청구: 의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 의회별 행동강령에 반환 기한(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예: 3시간 이내 등)
 - ▶ 서식 8(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참조

○ 의장에게 신고

-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의장은 해당 금품등의 성질에 따라 적절히 처리
 - ※ 의회별 행동강령에 금품등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기준(예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7호, 2012.2.29. 일부개정 · 시행))

제1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 ·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다.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상황 기록 및 관리(제3항)

- ▶ 서식 9 [금품등 접수 · 처리 대장] 참조

제21조 행동강령의 운영 · 처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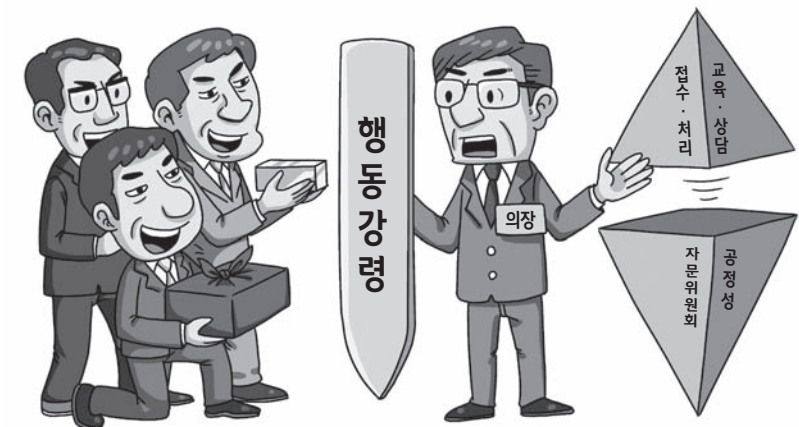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 · 처리 등)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게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 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1-1. 규정 취지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 · 상담 및 위반 신고사건 접수 · 처리 등의 운영주체를 의장으로 규정

21-2. 내용 해설

- 의장은 소속 의원에게 대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 · 상담 및 위반 신고 접수 ·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이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제22조제1항)
- 의장은 상담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할 수 있음



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2-1. 규정 취지

-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운영 자문기구를 둠으로써 의원간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에 의한 왜곡·편파 운영 방지

22-2. 의회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 참고자료 2.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 참조



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3-1. 규정 취지

- 지방의회별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자율권 부여
- 의회별 행동강령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도의 전국적 통일성 유지 장치 마련

23-2. 의회별 행동강령에서 구체화·세부화할 사항

- 직무관련자의 범위(제2조제1호)
 - 상임위원회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기준(제9조제2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지된 금품등의 한도액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제11조제1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수령 범위(제11조제1항제6호)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보고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13조)
 - 경조금품등의 수수 한도액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제17조제2항)
 -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19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0조)
 -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제21조) 등
- ▶ 참고자료 3.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참조

제24조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도나 운영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여러 운영 사례 중 잘 된 사례나 우수 제도를 발굴하여 안내함으로써 의회간 행동강령 운영 편차 최소화 및 운영 노하우 공유 지원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4항과 동일한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IV

관계 법령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문)
2.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체)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체)

정령 韓
세상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전문)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개정] [시행 2011. 2.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 · 단체로부터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 · 경과,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 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 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전문)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타법개정) [시행 2011. 2.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 · 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 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체)

(법률 제11327호, 2012. 2. 17. 일부개정) [시행 2012. 2. 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치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1327호, 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상임이 아닌 위원부터 적용하며, 대통령은 상임이 아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체)

[대통령령 제23231호, 2011. 10. 17. 일부개정] [시행 2011. 10. 17.]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31호, 2011.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발간일 : 2012년 6월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 화 : (02)360-6828 FAX : (02)360-3554

